

의정활동보고서

제173회 임시회 (2002. 10. 22 ~ 11. 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73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도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
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 그 다양성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경주에서 열리고 있
는 『2002 경북 세계농업 한마당』 행사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잘 마
무리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회기간중 여유롭지 못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타시·도의 비교견학을 다녀오신 예산결산 위원님
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수와 견학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의 대 테러전쟁 분위기와 북한의 핵개발 문제, 미국과
일본경제의장기침체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상황도 불투명한 수출전망과 소비위축 현상, 가계부채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을 맞아 신당창당과 국회의원 당적 이적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으로서 실익이 없는 소모성 정치논쟁을 떠나 일관성 있는 도정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난 여름 월드컵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자신감을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짧은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시는 의원의 의견이 곧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 준비와 추경예산안 심사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간 회기운영상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300만 도민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22

경상북도의회 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위원회활동사항

4. 기타사항

VI. 도정질문

부 록

☐ 예산안

☐ 건의안

☐ 결의안

☐ 행정사무감사계획총람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는 2002년 10월 22일 개최하여 11월 2일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9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0월 2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3회 회기결정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한 다음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 하였다.

회기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각종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 하였다.

10월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한·칠레FTA타결에 따른건의안을 의결하고 도정질문(박승학·김정기·김병진·장하숙의원)을 한 후 휴회의건을 의결 한 후 휴회를 하고, 11월 2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 표기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 제173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요구 : 방유봉 의원외 19명

다. 집회공고일 : 2002. 10. 9

라. 집 회 일 : 2002. 10. 22(화)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2. 10. 22 ~ 11. 2 (12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12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예결 특위
금회	9	2	1	1	1	1	1	1	1
누계	57	7	6	7	7	8	8	7	7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2. 10.22(화) 11:00	1. 제17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31(목) 11:00	1. 한 · 칠 레FTA타결에따른건의안 2. 휴회의건	제2차 원안가결
11. 2(토)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3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0.22(화) 12:30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의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11.2(토) 10:30	1.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 표기 촉구결의안	제2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0.25(금) 11:00	1.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2.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0.28(월) 14:00	1.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 특별회계설치조례 2.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소관,사회복지여성국소관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0.28(월)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환경산림국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0.24(목)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0.28(월) 11:00	1.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 지원조례안 2.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10.24(목) 11: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소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10.29(화) 10:00	1.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 환경산업국, 농수산국, 문화체육 관광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제 5 차 수정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6 (28)	6 (28)	5 (26)	1 (2)				
조 례 안	소계	(10)	(10)	(10)					
	의 회 제 안								
	도지사 제 출	(8)	(8)	(8)					
	교육감 제 출	(2)	(2)	(2)					
예 산 · 결 산		1 (4)	1 (4)	(3)	1 (1)				
동 의 · 승 인		(3)	(3)	(3)					
건 의 안		1 (3)	1 (3)	1 (3)					
결 의 안		1 (3)	1 (3)	1 (3)					
기 타 안		3 (5)	3 (5)	3 (4)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11 (33)	6 (28)	(10)	1 (4)	(3)	1 (3)	1 (3)	3 (5)			5 (5)
의회운영	(3)	(3)	(1)			(1)	(1)				
기 획	3 (4)	(1)			(1)						3 (3)
행정사회	1 (6)	(5)	(5)								1 (1)
교육환경	(2)	(2)	(2)								
농 수 산	(3)	(3)	(1)		(1)	(1)					
산업관광	1 (3)	(2)	(1)		(1)						1 (1)
건설소방	(2)	(2)					(1)	(1)			
특 별	1 (4)	1 (4)		1 (4)							
본회의	5 (6)	5 (6)				1 (1)	1 (1)	3 (4)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	
누 계	-	-	-	-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6 (16)			1 (3)	(1)	(1)	(1)	(2)	1 (3)	4 (5)
의회운영										
기 획	1 (1)									1 (1)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2)					(1)		(1)		
농 수 산	1 (3)				(1)				1 (2)	
산업관광	2 (3)						(1)			2 (2)
건설소방	2 (6)			1 (2)				(1)	(1)	1 (2)
특별위원회										

※ ()안은 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 (11)	2 (11)				5 (5)
의회운영						
기 획	1 (1)	1 (1)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2)	(2)				
농 수 산	(2)	(2)				1 (1)
산업관광	(1)	(1)				2 (2)
건설소방	1 (4)	1 (4)				2 (2)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02. 10. 10)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 한조례개정조례안	기 획 (2002. 10. 10)
경상북도지사 (2002. 10. 10)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기 획 (2002. 10. 10)
경상북도지사 (2002. 10. 10)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 획 (2002. 10. 10)
경상북도지사 (2002. 10. 10)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운송사업자재정지원 조례안	기 획 (2002. 10. 10)
경상북도지사 (2002. 10. 15)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 계설치조례안	행정사회 (2002. 10. 15)
경상북도지사 (2002. 10. 19)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상임위 (2002. 10. 19)

2.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2. 10. 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2002. 10. 21
2002. 10. 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	2002. 10. 21
2002. 10. 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	2002. 10. 21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예결특위	2002.10.16 ~10.18	전북,전남 도의회	타시도 비교시찰

4. 기타사항

○ 국제친선교류단 활동

- 기 간 : 2002. 10. 5 ~ 10. 9 (5일간)
- 장 소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참 석 : 최원병 의장 외 의원 6명

○ 의원해외연수

- 기 간 : 2002. 10. 6 ~ 10. 20 (15일간)
- 장 소 : 북유럽 7개국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 외 의원 13명

○ 2002 경북여성대회

- 일 시 : 2002. 10. 10(목) 10:30
- 장 소 : 경산 시민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김희문 행정사회위원장

○ 전국 민방위 시범훈련

- 일 시 : 2002. 10. 10(목) 14:00
- 장 소 : 영천시 금호강 완산보
- 참 석 : 최원병 의장

○ 2002 경북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 일 시 : 2002. 10. 11(금) 14:00
- 장 소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축사), 도의원

○ 건군52주년기념 진중창작품 전시회

- 일 시 : 2002. 10. 12(토) 10:00
- 장 소 : 대구 우방랜드 전시장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경북장학회 이사회

- 일 시 : 2002. 10. 14(월) 11:0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희문 행정사회위원장

○ 제1회 경상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

- 일 시 : 2002. 10. 14(월) 14:00
- 장 소 : 안동 시민회관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장대진 예결위원장

○ 제1회 여성농업인대회

- 일 시 : 2002. 10. 15(화) 11:00
- 장 소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축사), 김주연 의원, 이정백 의원

○ 제2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2. 10. 15(화) 11:20
- 장 소 : 안동 시민회관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축사), 장대진 예결위원장

○ 2002 새농민회 경북도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2. 10. 16(수) 10:30
- 장 소 :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 (축사), 이정백 의원

○ 향군창설 50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 일 시 : 2002. 10. 16(수) 11:0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제4회 국민대화합 전진대회

- 일 시 : 2002. 10. 16(수) 14: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농업한마당 국제학술심포지움

- 일 시 : 2002. 10. 17(목) 10: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축사)

○ 2002 경북능금잔치

- 일 시 : 2002. 10. 17(목) 11:00
- 장 소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이정백 의원

○ 제43회 경상북도 4-H 경진대회

- 일 시 : 2002. 10. 18(금) 10:00
- 장 소 : 경주 보문 청소년수련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축사)

VI. 도정 질문

□ 제2차 본회의

박 승 학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선중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청송출신 박승학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승회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힘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깊은 시름에 젖어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번 제173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되는 피해복구의 예산으로 다소나마 힘을 얻고 복구에 진력을 할 수 있다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서 금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치가권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6%, 국가 공공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88%, 벤처기업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심 반경 50km내에 전 국민의 50%가 몰려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방의 우수인력은 무조건 서울로 몰리고 서울은 정보와 돈, 인재와 권력까지 몰려 지방의 자원은 독에 물이 새듯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의 과도한 집중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불신과 서울 사람 일류 국민, 지방 사람 2류 국민이라는 계층간에 위화감으로까지 이어져 사회 불안 요인이 될뿐더러 투기와 거품 경제의 원인이 되고 불균형한 자원활용으로 발전 잠재력까지 악화시키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아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시면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요구를 중앙정치권에 강조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추어 우리 경북도내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지도를 놓고 보면 경북도청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은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주소는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민이 도청에 알아볼 사항이 있어 전화를 하자면 시외지역 번호 053을 누르고 시외통화료를 내면서 민원을 요구해야 하는데 경북도청을 수행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경북은 한 뿌리이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또 도청이 과거부터 이 자리에 있어 왔던 점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을 좀더 확대해 보면 경상북도의 남부권과 북부권과의 격차는 어떠한가? 본의원이 인위적 구분이 아니라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에 따르면 경북도를 개발권역으로는 4개권역, 지리적 구분으로는 6개 지역권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별해서 12개 시·군을 남부권으로, 11개 시·군을 북부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인구비로는 69% 대 31%로 절대적으로 남부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면적으로는 44% 대 56%로 북부권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을 보면 국도, 지방도의 총 연장은 정확한 통계 자료를 집행부가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견해서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기존의 도로망을 차치하더라도 건설내용을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김천~동대구~경주를 잇는 고속도로 등 편중된 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내 21인 이상 사업체를 살펴보면 총 2,163개의 사업체 중에 북부권에는 184개 업체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남부권과 북부권의 반목이나 갈등을 보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남부, 북부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지역과 군지역의 불균형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부지역 영양, 청송, 울진, 봉화, 영덕 등 5개군을 모두 합한 인구가 21만5,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경산시, 한 개시의 인구 21만5,000명과 같습니다.

하찮은 얘기이지만 도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현재 공연의 실적을 보면 총 55회 공연중 시지역은 32회, 기타지역은 12회, 군지역은 11회뿐입니다. 특히 13개군 지역 중에서 한 번도 공연실적이 없는 지역이 6개 지역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공연실적에 대한 이유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낙후감으로 살아가는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문화가 숨쉬는 웅도, 경북을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정부예산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소득의 재분배라는 중요한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지출 또한 자원의 재배분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북부지역이 비록 인구는 적지만 경북도의 물길에 시작되고 공기를 맑게 해 주는 숲을 간직하고 있으며, 피곤해 있는 우리 도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도내의 지역간의 불균형과 도·농간의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시켜 웅도 경북을 이끌어 가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10조 종류별 사무 배분 기준, 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등의 조항을 보면 경제정책, 고용정책, 실업률 관리 등이 지방자치단체 권한 밖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경북 도의 경제, 사회, 문화를 총괄하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분석에 따르면 경제지표 및 산업생산 지수, 수출액, 중소기업체 평균 가동률, 어음부도율,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 제지표들이 상반기 중에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 전망에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통계사무소가 최근에 발표한 9월 중 고용동향을 보면 경북지역 실업자 수는 2만2,000명으로 실업률이 1.5%입니다. 연중 최저치로 상반기 평균 2.2%보다 크게 개선이 되었고, 전국 평균 2.5%비해 아주 양호한 수치로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통계의 허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도 경북으로 표현되듯이 인구기준으로 31.5%인 88만4,000명이 농어촌지역에서 살고 있고, 산업근로 기준으로 29.6%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실업률이라는 것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주변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를 제대한 20대 초·중반의 농촌지역 청년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물론 농번기에 가족의 일손을 돕는다는 점에서 일시적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직업이 농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볼 때 경상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는 농어촌지역의 고용정책, 실업대책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 사업에 3년간 886억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297만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년 실업대책, 고용촉진 훈련 등에도 153억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대책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일일 지급액이 일인당 약 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일 품삯이 남자의 경우 3만원, 여자의 경우 2만5,000원으로 정하여 상호부조의 형식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들고 보수가 적은 들녘일, 밭일을 기피합니다. 이것이 옳은 정책입니까? 고용정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전체 2002년 당초예산을 보면 도 본청이 2조2,000억원, 23개 시·군의 예산이 4조3,000억원으로 합해서 6조5,000억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 40%, 고정성 경비 20%를 추정하여 제하고 나면 약 2조6,000억원의 사업예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계획안을 작성하시겠지만 그 중 어떠한 계획에도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적시하는 사업계획서는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 향후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안 수립할 때 예상되는 경제적 기여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일시적 행사성 사업일지라도 일시적 고용효과 등을 예상하고 적시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전환이 없다면 고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고용정책, 실업률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20일 교육여건 계획에 의거 실시된 교실 증·개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 수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시 속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7월20일 전국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청와대회의에서 당초 200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를 계획했던 고등학교 교실을 2002년까지 앞당겨 해소기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경북 도는 51개교 240개 교실을 2002년 2월까지 급히 증설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재원도 신설 3개교의 신설비용까지 포함해서 484억7,900만원을 기채하여 확보하고 그 중 교실당 8,000만원을 예상하여 240개 교실 증·개축비에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계획의 졸속성, 부실공사의 우려, 공사기간의 문제, 동절기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당시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2년 2월까지 꼭 완공한다는 다짐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사업시행 결과 증·개축을 반납한 학교의 미집행 예산을 재조정하여 49개교 242개 교실을 증·개축하였으며, 예산은 당초 192억원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변경사유가 발행하여 재조정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빠진 교실 등의 이유로 추가배정을 확정된 포항여고 등 7개교에 대한 재공사를 시작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7개교의 학교가 재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기이 배정된 교실 증축공사는 어떠한 상태였던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 7개 학교의 공사가 현재까지 완료가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소견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과밀학급을 해소시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한다는

근본취지에서 동감하고 내일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실행단계에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균형발전 이야기와 연계시켜서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과 농어촌 소외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 대상에 49개 모든 학교가 시지역 학교들입니다. 실제 농촌지역은 학년당 학생수가 한 학급을 채우지 못한 현실에서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본의원 출신지역 5개면은 전체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용도 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고 설립을 요청했습니다만 대상 학생수가 되지 않으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중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은 웅도 경상북도의 도민으로 살아가면서 단지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실내운동도 하지 못하고 소외된 환경까지 2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사회적 정의입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와 교육감님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7월초 현직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지자체에 대한 견해를 밝히던 중에 민선을 통한 자치단체장의 무용론과 민의를 반영코자 하는 의회는 행정력을 방해하는 역기능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의를 대표해 도정에 일조를 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던 당시 본인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간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역기능은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민선에 의한 단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이 가지는 행정력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주민들이,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주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 이 보다 진일보된 민주주의 제도라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숯한 역경과 투쟁을 통해 재부활시킨 제도입니다.

본의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우월주의에 젖어 알량한 기술관료적 사고를 가진, 시대에 반하고 지방자치의 뜻을 왜곡시키는 소수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민선으로 뽑은 여기에 계신 두 분, 민의를 대표하는 57명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좀더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이 자리도 존재치 않는 것이 아닙니까? 경북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과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감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시다만 행여 그러한 사고가 존재한다면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몇 달되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많은 생각과 색다른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안건을 접할 때마다 본의원은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칙과 소신으로, 때로는 유연한 사고와 세상이치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선배님의 조언을 쫓을까도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이 제도가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보다 진일보된 제도를 갖고자 했던 선배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라면 본의원도 이 본래의 뜻이 지켜질 수 있는 원칙이 준수되는 의정활동을 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와 도지사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정 기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도민을 걱정하시고 경상북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오늘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의근 지사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김천 출신입니다.

김천은 원래 풍수해가 없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여겨오다가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보니 주민들에게 상실감이 더욱 깊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물심양면의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의근 지사께서 직접 현장을 누비시면서, 또한 중앙부처를 다니시면서 복구와 보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김천 지역의 출신 도의원으로서, 또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해 현장에서 따가운 햇빛을 마다 앓고 내리는 비를 맞아가면서 수재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시고 삽자루를 들고 직접 응급복구에 참여해 주시고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밤잠을 설치주신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도내의 많은 기관단체와 도민들이 김천의 아픔을 같이 해주신데 대하여 시간관계상 일일이 거명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빨리 응급복구가 끝나고 또 항구복구 또한 진도가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경상북도의 행정력과 유사시 보여주는 도민의 결집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또 한번 위기 시에 경북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당초 도정질문의 계획이 이번 회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해복구시 보여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수해 발생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므로 이 단상에 선 것입니다.

저의 도정에 대한 관심사항은 대구·경북의 통합, 농촌·농업·농민에 대한 문제와 문화엑스포, 경북개발공사, 체육회, 세계농업한마당 등의 운영 문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하여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말씀드렸듯이 당면문제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패턴도 많이 변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농경시대에 중시되던 치산치수가 개발행정에 밀리다가 이제는 문화와 복지행정에 밀리는 행태에다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치산과 치수행정은 그 인력이나 예산이 변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5·16이후 연료의 석탄화와 석유화가 되면서 산을 녹화시키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녹화이후 관리의 부실로 경제적 가치를 축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산림행정은 민선자치시대가 재개되면서 더욱더 뒷전으로 밀리면서 담보상태에 빠져있고, 일선 시군의 산림직 공무원들은 도시공원가꾸기와 가로수 관리업무에 치중할 뿐입니다. 국비로 내시되는 사업만 어쩔 수 없이 투자할 뿐 자체사업비로 산을 가꾸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등산로나 만들고 산에 공원벤치나 설치하는 일이고 효용가치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형체가 몇 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산림·도로사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목의 특성에 따라 성장환경을 만들어줘서 입목의 축적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행정시책이 펼쳐지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잡목이 뒤엉켜서 입산도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산의 현실인 것입니다. 태풍 루사가 바람과 물로서 산을 핥으니까 낙엽송은 뿌리째 뽑혀서 소하천의 흐름을 막고 제방 독을 무너뜨리고 농경지를 휩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 현장이 지난번 수해 때 산사태의 대부분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한 ‘환경파괴다, 재해의 원인이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임도개설사업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산림도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준공후 3년만 관리해 주면 도에서 자체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그 동안 자체관리는 없고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임도개설을 계속한다면 획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강원도 산이나 경상도 산이나 충청도나 전라도 산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수종이나 육림방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감각만을 자극하는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와 잔치행정을 지양하고 인기가 있든 없든 차별하고 조용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경북도정과 시·군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행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 일환으로 10년후에는 누가 보아도 ‘경북의 산은 다른 도의 산과 다르다.’라는 인식이 들도록 치산대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 8월의 북부지방 폭우와 태풍 루사의 엄청난 위력 앞에 우리의 하천은 범람과 유실로 답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하천골재 채취와 경영치수사업, 하천부지 주차장, 체육공원 등 하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국가하천의 골재 채취를 하면 지방1급하천이 쇠굴되고, 지방1급하천의 골재를 채취하면 2급하천의 제방이 쇠굴되어 약화되고, 지방2급하천의 골재를 채취하면 소하천의 제방이 쇠굴되어 약화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악순환은 골재의 처분 이익보다 더 많은 치수사업비의 투입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천은 그 흐름에 따라 퇴적과 침식을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태를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하천부지의 이용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하천부지에다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원화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하천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 재산인 용폐된 하천부지를 도지사 승인없이 시장·군수 마음대로 매각 처분해도 사무관 한 사람 경정계한 것으로 그 끝을 맺은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감사관계서 말하기를 “벌이 강하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하기 때문에 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벌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지마는 벌을 줄 때는 엄정하고 일벌백계로 강하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가 중앙과 기초단체의 중간기관으로서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을 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월권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시군이 하천법 따위는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재난을 초래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기관을 적발·지적하여 의법조치한 사례가 있었는지, 현재 하천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하천관리를 좀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낸 김천의 감천에는 짧은 구간에 많은 교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설치된 고속철도의 교각은 1989년에 통수단면 수리계산에 의하여 건교부 승인을 받았고, 1995년에 시공한 김천대교의 교각은 건교부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교량은 같은 하천에 가까운 거리에 시공하는데도 교각으로 인한 영향은 제각각 계산하여 그 시설을 함으로써 지난 수해때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김천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교량을 더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도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의견제시나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해발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미시적이거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진 원인 외에도 그동안 치산과 치수행정이 이에 대비하지 못하여 그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지금 날씨는 추운데 집과 농토를 잃고 가을은 왔건만 수확할 농작물은 없으니 더욱 시름이 깊어져 이제는 재기의 희망마저 포기한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내 집, 내 농토가 수몰되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댐의 축조를 이제는 댐을 빨리 막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농토가 유실된 곳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침수지역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벼가 탈곡을 해 보면 먼지만 나고 쌀 대신 쌀가루나 싸라기만 나옵니다.

이러한 피해면적이 김천에는 약 400만평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년 같으면 수확이 벌써 끝났어야 할 들판에 벼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 탈곡기 사용료를 600평당 15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탈곡기 임차료도 건지지 못할까봐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아닌 제방 붕괴로 외부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서 농사에 해로운 토양의 유입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토양개량제와 객토, 유기물 퇴비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수확되는 농작물은 없고 내년 농사비용은 몇 곱절 들어가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탈곡 수확기인 콤바인을 가진 농민들이 너무나 많이 나는 먼지로 인하여 남의 벼수확 작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서산간척지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대형 고성능 로터리식 수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과 도로, 교량의 응급복구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3,000평 이상 농민은 쌀 두 포대, 그 이하는 쌀 네 포대가 구호식량조로 보상되는 줄로 아는데 이것으로서는 안됩니다. 조사 당시 60% 감수로 보고한 것이 거의 90% 이상 감수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벼농사 짓는 농민이 양식 걱정을 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대중 앞에 서실 때마다 농민이 잘 살고 농촌이 발전하는 행정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3기 취임식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0년전 유행가 ‘고향무정’이라는 노래가사가 지금 농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문전옥답은 잡초에 묻혔고, 바다에는 빈 배만 떠있고 어부들 노래소리가 멎은 지가 오래라는 내용말입니다. 금년은 수해도 수해지만 모든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도내 모든 농촌과 농민이 흉년의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수해복구를 위하여, 수재민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지만 이제 침수지역 농민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와 행동을 보여주실 때라고 믿습니다. 침수지역 벼를 보상차원에서 전량수매하여 주시고, 침수지역 농지의 토양개량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지사의 답변을 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병 진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승회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옹도 경북의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문경시 출신 김병진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사회는 다변화되었고 대중은 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활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체, 경제 상황,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복잡하고 세분화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듯 오늘의 우리는 더욱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남보다 앞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왔습니다. 또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역사가 오늘의 경상북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1일 강우량이 1000년 빈도를 넘어서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는 총 세 차례의 태풍과 호우로 사망·실종 40명, 이재민 1,416세대에 4,042명, 사유시설 20종에 920억원, 공공시설 9,816건에 7,692억원 등 총 8,621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해복구를 위해서는 사유시설 27종의 1,547억원의 복구비가 들어야 하며, 공공시설 9,838건에 1조1,824억이라는 복구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해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총 복구액은 1조3,371억원의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280만 경북도민 1인당 47만7,535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재의연금,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물적, 심적 지원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액과 복구액은 실로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근본적인 수해피해대책을 묻기 전에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재해에 대한 복구도 중요하고 자원봉사, 수재의연금 등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온통 재해지역에 쏠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시는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항목 항목마다 구분하여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현재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면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구복구를 병행하고 있는데 재해복구 전체를 항구복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의 하위규정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비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항구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또다시 재해재발의 위험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문경 농암에 거주할 때인 1980년7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집도 떠내려가고 점포도 떠내려가고 농장도 떠내려가고 제가 짓는 전답은 매몰되었으며 사료도매용 창고까지 떠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농장에 있는 돼지 200여 마리 양계하던 닭 5,000여 수,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가재도구는 말할 것도 없고 숟가락 하나 남지 않고 모두가 사라졌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재산은 열심히 일해서 또 벌어서 모으는 것입니다. 가재도구도 새로운 것을 사면 됩니다. 입는 옷들도 새것으로 사면 훨씬 좋습니다. 집도 용자 200만 원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날이 지나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억을 아무리 되뇌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오는 동안 손때 묻고 함께 했던 지난날의 저와 관련된 역사였습니다. 어릴 때 개구쟁이 사진 하나, 수학여행 갔을 때 추억어린 사진 하나, 뿐만 아니라 가족사진 한 장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사진도 없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도 하나 없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나의 흔적들이 지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가슴아픈 것은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시간 정도의 호우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수해지역의 주민들은 의식주도 걱정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은 물질로 조금의 보상은 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의근 도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마음이 아프고 가슴으로 울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해복구는 반드시 항구복구가 되어야 하나 여의치 못하여 굳이 법령의 적용을 하는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각종 법령이 정한 사업기본계획 등의 수립 정도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만약 재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 지역은 몇%이고 항구복구 지역은 몇%이며 도 전체가 항구복구 지역의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묻겠습니다.

현재의 재해유형은 국지적 호우와 기상의 이변으로 인하여 재해가 점점 빈번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 전지역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만약 재해를 입는다면 항구복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항구복구를 위한 기본은 수해피해지도 작성이 필수적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수해피해지도 작성을 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 및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지역의 항구복구 및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수해피해지도를 작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세세분석 하여야 합니다. 물길이 어디로 가고 오는지, 어떤 것이 방해가 얼마나 되었는지, 침수지역은 어느 부분인지, 대피는 어디로 어떻게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홍수경로, 주민대피경로, 우심지역의 피해원인 분석 및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제작하였고, 체계적으로 기상과 천재지변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역학을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약 4만여 회에 달하는 천재지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지금부터라도 재해 시 피해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한다면 재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며, 수해예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입체지형정보(GIS)를 이용한 홍수피해 분석을 시행하여 좀더 근본적인 수해피해의 예방을 강구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리정보를 이용한 홍수피해 예방대책은 현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해피해가 가장 극심한 김천의 경우 먼저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형도를 촬영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프로그램화하면 입체지형도가 완성됩니다.

김천의 입체지형도 위에 비를 뿌립니다. 200mm, 300mm, 400mm, 600mm, 800mm까지 호우를 쏟아 부으면 몇 밀리미터의 비가 왔을 때, 물이 잠기는 지역, 터지고 떠내려가는 지역, 홍수피해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주민들은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수해피해를 보완해야 하는지 등 그 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곳의 하천이 터지고 교량이 넘치는 등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홍수예방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홍수피해로 인한 피해액을 계상할 때 입체지형정보를 이용한 홍수피해 분석이 비록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피해액과 이재민들의 아픔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좀더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교량, 도로, 하천 준설 등의 설계 시 설계심의 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설계심의는 서면심의와 회의심의로 다루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에 재해관련 설계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심의는 모든 공공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해 및 안정성 관련, 현장회의 심의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설계심의는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로서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입찰방법, 일괄·대안 입찰의 설계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 방법을 현장회의심의로 전환하여 모든 공공시설물을 설계심의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해는 100억 원 이상의 큰 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천 만원부터 몇 십 억원까지의 중소형 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수해복구현장을 살펴보면 모든 공공시설 분야에 설계 심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은 현재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소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유실된 곳입니다. 하천폭이 6m입니다. 노폭이 2.5m입니다. 이것은 경운기용 도로입니다. 여기 6m 하천폭에 보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3m에다 교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도 교각이 사각형 교각입니다. 이것은 몇 년 후, 올해같이 많은 비가 오지 않고 적은 비가 오더라도 사각교각에 부유물이 걸립니다. 그러면 위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이 공사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 설계심의를 한다면 6m하천에 경운기가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교각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현장심의로 시행하고 반드시 재해와 안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량건설 시 교각의 형태변경이나 교각으로 인한 담수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번 수해피해를 분석할 때 교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7월 제정된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하천통수단면 확보 및 교각설치 간격이 12.5m이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교각의 최소거리는 12.5m이상이고 교각의 지름은 보통 1m~3m정도라고 가정할 때 강폭이 120m라고 한다면 10개 정도의 교각이 설치됩니다. 이것은 교각의 폭이 1.5m라고 하더라도 강폭이 15m이상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m의 강폭이 15m이상 줄어든다면 10%이상 강폭이 줄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담수효과가 발생해서 교량 위로 하천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각의 부피로 인하여 강폭을 15m이상 늘리든지, 아니면 교각의 부피를 생각하여 강폭을 좀더 크게 해서 담수효과가 생기지 않아야지 하천이 범람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시 교각에 나무, 잡초, 부유물 등이 걸려 물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내고 있는 데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각의 형태는 원형, 타원형, 다이아몬드형, 사각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워져있으나 이 교각에 부유물이 걸려서 물흐름을 방해하여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각의 형태를 연구하여 어떤 형태의 교각이 부유물이 적게 걸리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각의 단면에 부유물들이 걸렸을 때 부유물들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밑거름 유도철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수해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요구이자 충정임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후 다시는 우리 지역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2년이 저물어 가는 10월의 마지막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새로워져야 하며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00만 도민을 위한 일이요,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식·정보·복지사회의 새로운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공직자께서는 도민의 진솔한 소리가 자기 자신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며, 손과 발과 머리라는 사실을 되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공직자가 힘을 합칠 때 살맛 나는 경북을 만들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장 하 숙 의원(기획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옹도 경북의 수장으로서 300만 전체 도민의 복리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경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시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영주시 출신 장하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정치상황을 볼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21세기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에 대한 대결보다는 비방과 흑색선전만이 난무하고 있는 혼탁한 정치풍토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수재민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물경제지표 또한 하락하고 있어 향후 경제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서 도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 본의원은 도정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정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메킨지는 작년도 우먼코리아 보고서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두뇌의 활용을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발표한 유엔의 인간개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6개국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98년도에는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지난해 1월에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의 주류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남녀 성비 불균형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수적인 사고로 인해 여성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선도정출범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7년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여성정책전문기관인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140만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여성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여성들의 능력발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대통령선거 후보자들께서는 고위직에 여성공무원을 30%까지 확대 임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정에도 여성 간부공무원을 확대 임용할 의향은 없으신 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 천년의 지평에서 지식정보화사회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공간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나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생활과 문화, 산업과 기술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무한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계 5억의 인구가 사이버공간에서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실로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일 뿐 아니라 3,000만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정보화선진국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규모의 62%를 IT산업이 기록할 만큼 이제 IT산업은 우리의 경제성장과 수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농어촌지역이 많아 도시지역보다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경북이 조국근대화를 이룩했듯이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우리가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경북의 정보화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또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새마을운동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와 관광, 복지과 환경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아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문화, 레저사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만이 내세울 수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고유한 관

광상품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제3차 경북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동남부지역은 경주와 포항을 잇는 역사와 해양산업관광개발이 중심이 되고 남서부지역은 고령, 경산, 청도 등을 연계하는 테마형 레저문화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 영주, 문경, 봉화 등 북부지역권은 유교문화와 연계된 청정휴양지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는 아는 것만큼 보고 보는 것만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머물러 쉬어 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관광이 되도록 우리 경북 고유의 특성과 권역간 유기적인 연계관광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또 우리 경북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본관광객 유치활동 차원에서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박5일동안 일본의 센다이시와 나고야시 등 두 곳에서 관광홍보설명회를 위해 대규모 문화관광홍보사절단을 파견하여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문화관광 홍보는 관광상품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행사가 일회성 행사인지 아니면 정기적, 지속적인 행사인지 해외관광홍보설명회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위원은 난해한 교육문제의 현명한 해법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교육의 성공은 바로 그 해당지역의 성공이요 또한 농촌교육의 실패는 그 지역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농촌지역 교육문제를 관찰해 보면 실로 얼마나 비교육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산, 칠곡, 군위, 영천, 청도 등 대구인근 시·군 지

역 상당수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대구시로 위장전입 하는 등 경북의 농촌지역의 교육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도시 이주로 인한 이농으로 대도시는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촌의 학생수는 갈수록 감소하여 학교 통·폐합은 물론이고 폐교직전의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교육이 날로 황폐해 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대도시 위주의 편협한 교육정책 탓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모든 정책적 배려를 농촌지역 우선으로 실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교육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농촌지역 교육현장에서 소신껏 헌신 할 수 있게 근무여건 개선, 승진가감점 부여 등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경상북도의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후보자 소견발표에서 경북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식 선언하시면서 교사들이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특별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전제하고 중앙정부와 교육부의 유대관계를 끈끈이 형성해 온 본인이 최적임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비록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학교교육 여건과 복지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예산안 : 1건
- 건의안 : 1건
- 결의안 : 1건
- 행정사무감사계획총람 : 1건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10.19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2. 10. 28

다. 상정일자

경상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 10. 29 상정, 질의, 토론, 의결)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III. 추경예산 편성 방침

- 8월 4~11일 호우피해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만 반영
- 국고 지원예산 전액 반영, 도비부담은 금년내에 시급히 시행
해야할 사업비 반영
- ※ 장기 도비부담사업(522억원) 및 국고채사업(319억원)은 2003
반영
- 제1회 추경이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전액 정리

IV. 추가경정 예산(안)

1. 세입 · 세출예산 규모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증감율
합 계	3,445,401	2,488,108	957,293	38.5%
일 반 회 계	2,975,993	2,031,670	944,323	46.5
특 별 회 계	469,408	456,438	12,970	2.8
의료보호기금운영	187,240	174,270	12,970	7.4
치 수 사 업	21,918	21,918	0	0
경 도 대 학 운 영	6,950	6,950	0	0
지역개발기금운영	253,300	253,300	0	0

(나)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445,401	100	2,488,108	100	957,293	38.5%
자 체 수 입	855,675	24.8	853,081	34.3	2,594	0.3
지방세 수입	500,000	14.5	500,000	20.1	0	0
세 외 수 입	355,675	10.3	353,081	14.2	2,594	0.7
경상적수입	65,098	1.9	65,098	2.6	0	0
임시적수입	290,577	8.4	287,983	11.6	2,594	0.9
의 존 수 입	2,589,726	75.2	1,635,027	65.7	954,699	58.4
지방교부세	398,297	11.6	394,237	15.9	4,060	1.0
지방양여금	189,684	5.5	189,684	7.6	0	0
보 조 금	1,891,745	54.9	976,106	39.2	915,639	93.8
지 방 채	110,000	3.2	75,000	3.0	35,000	46.7

(다)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3,445,401	100	2,488,108	100	957,293	38.5%
경상예산		191,257	5.5	191,039	7.7	218	0.1
	인건비	97,464	2.8	97,464	3.9	0	0
	경상적경비	93,793	2.7	93,575	3.8	218	0.2
사업예산		2,721,188	79.0	1,754,417	70.5	966,771	55.1
	보조사업	2,405,212	69.8	1,442,501	58.0	962,711	66.7
	자체사업	315,976	9.2	311,916	12.5	4,060	1.3
채무상환		161,092	4.7	161,092	6.5	0	0
예비비등		371,864	10.8	381,560	15.3	△9,696	△2.5

2. 일반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2,975,993	100	2,031,670	100	944,323	46.5
지방세수입		500,000	16.8	500,000	24.6	0	-
세외수입		109,709	3.7	109,709	5.4	0	-
	경상적경비	19,674	0.7	19,674	1.0	0	-
	임시적수입	90,035	3.0	90,035	4.4	0	-
지방교부세		398,297	13.4	394,237	19.4	4,060	1.0
지방양여금		189,684	6.4	189,684	9.3	0	-
보조금		1,734,033	58.5	838,040	41.3	905,263	108.0
지방채		35,000	1.2	0		35,000	100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2,975,993	100	2,031,670	100	944,323	46.5
경상예산	186,862	6.3	186,862	9.2	0	-
인건비	96,108	3.2	96,108	4.7	0	-
경상적경비	90,754	3.0	90,754	4.5	0	-
사업예산	2,417,867	81.2	1,463,848	72.1	954,019	65.2
보조사업	2,218,968	74.6	1,269,009	62.5	949,959	74.9
자체사업	198,899	6.7	194,839	9.6	4,060	2.1
채무상환	41,242	1.4	41,242	2.0	0	-
예비비등	330,022	11.1	339,718	16.7	△9,696	△2.9

-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율
합계	2,975,993	100	2,031,670	100	944,323	46.5	11.2%
일반행정비	449,041	15.1	292,013	14.4	157,028	16.6	53.8
사회개발비	801,009	26.9	773,830	38.1	27,179	2.9	3.5
경제개발비	1,460,753	49.1	691,091	34.0	769,662	81.5	111.4
민방위비	88,279	3.0	88,129	4.3	150	0	0.2
지원및기타경비	176,911	5.9	186,607	9.2	△9,696	△1.0	△5.2

3. 특별회계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469,408	100	456,438	100	12,970	100	2.8%
의료보호기금운영		187,240	39.9	174,270	38.2	12,970	100	7.4
치 수 사 업		21,918	4.6	21,918	4.8	0	0	0
경 도 대 학 운 영		6,950	1.5	6,950	1.5	0	0	0
지역개발기금운영		253,300	54.0	253,300	55.5	0	0	0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469,408	100	456,438	100	12,970	100	2.8%
	세 외 수 입	245,966	52.4	243,372	53.3	2,594	20.0	1.1
	경상적수입	45,425	9.7	45,425	9.9	0	0	0
	임시적수입	200,541	42.7	197,947	43.4	2,594	20.0	1.3
	보 조 금	148,442	31.6	138,066	30.3	10,376	80.0	7.5
	지 방 채	75,000	16.0	75,000	16.4	0	0	0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율
합계	469,408	100	456,438	100	12,970	100	2.8%
경상예산	4,395	0.9	4,177	0.9	218	1.7	5.2
인건비	1,356	0.3	1,356	0.3	0	0	0
경상적경비	3,039	0.6	2,821	0.6	218	1.7	7.7
사업예산	303,321	64.6	290,569	63.7	12,752	98.3	4.4
보조사업	186,243	39.7	173,491	38.0	12,752	98.3	7.4
자체사업	117,078	24.9	177,078	25.7	0	0	0
채무상환	119,850	25.6	119,850	26.2	0	0	0
예비비등	41,842	8.9	41,842	9.2	0	0	0

4. 지방채 발행계획

- 이번 추경에서 발행될 지방채는
 - 총 350억원으로서
 -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에 쓰여질 계획이며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할 예정임

- 지방채 발행 조서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기 채 선	발행액	발 행 조 건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계	1건		35,000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비	사 유 시 설 및 소규모공공시설 복구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	35,000	5.5%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도 비

V.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 내용과 같음

VI. 검토의견

1. 총 괄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2조 4,881억 8백만원보다 9,572억 9천 3백만원(38.5%)이 증액된 3조 4,454억 1백만원입니다.

○ 이를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16억 7천만원보다 9,443억 2천3백만원(46.5%)이 증액된 2조 9,759억 9천 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64억 3천 8백만원보다 129억 7천만원(2.8%)이 증액된 4,694억 8백만원입니다.

○ 세입 예산에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9,443억 2천 3백만원으로서

- 지방교부세 40억 6천만원
- 국고보조금 9,052억 6천 3백만원
- 지방채 350억원입니다.

○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 지난 8.4~11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1,066억원
-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8,337억원
- 일반 중앙지원사업비 120억원
- 특별회계전출금(의료급여진료비) 17억원 등을 증액하고
- 예비비 97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564억 3천 8백만원보다 129억 7천만원이 증액된 4,694억
8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만 129억 7천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 상임위원회 주요 검토내용

행정사회위원회

-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2,716개소)이 완전복구 되는 동안 주민불편 최소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 강구
- 각종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항구적인 차원에서 보완 공사가 이루어져 재정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
- 화장장, 공설묘지 등은 주민정서와 직결되는 시설물인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평소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교육환경위원회

- 병원시설의 경우 피해발생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재해에 대한 병원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복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실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
- 특히,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시설은 조기에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농수산위원회

- 이번 수해복구 추경예산이 수재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
- 철저한 피해조사 뿐만아니라 각종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항구적인 예방대책 강구

산업관광위원회

- 문화재, 체육시설, 관광지 등의 조속한 수해복구로 원상회복
- 평소 문화재 등의 보존과 공공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건설소방위원회

- 세입부문중 국내차입금 350억원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수해복구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 일괄 발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재·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 특히, 동절기 공사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의 소지를 차단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1,066억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8,337억원, 일반 정부지원사업 120억원, 특별회계전출금 17억원 등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 특히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이 내시되는데 따른 도비 부담을 위해 지방채 350억원을 발행하고
- 예비비 97억원을 삭감하여 신속한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시의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관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안을 미리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하여는 앞으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추진시 가장 시급한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 또한 각종 시설물 피해복구도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피해정도 및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 동절기 공사를 예상,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재해·재난시마다 거론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단기시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 정 내 용

(일반회계)

<삭감조서>

과 목 별		예 산 요 구 액 (천원)	심사결과		수 정 예산액 (천원)	증 감 내 역
관	항		증 액	감액		
소방관리	소방 관리	86,908,806			86,908,806	세 항) 포항소방서운영 세세항) 사업예산(자체) 목) 시설비 • 죽도시장소방관대기실증축 40,000천원 전액삭감

<증액조서>

과 목 별		예 산 요 구 액 (천원)	심사결과		수 정 예산액 (천원)	증 감 내 역
관	항		증 액	감액		
소방관리	소방 관리	86,908,806	0	0	86,908,806	세 항) 소방행정 세세항) 사업예산(자체)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 죽도시장소방관대기실증축 40,000천원 신설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

UR협상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였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대외 협상력 상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상실케 하여 우리 농업을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의 고통과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가 서명함으로써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대 정부 신뢰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도의회 차원의 대 국회·정부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 째,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과정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소상히 밝히고, 중남미 지역의 경제적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에 급급하여 칠레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협정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

둘 째, 정부는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라도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셋 째, 정부는 농업을 불모로 한 FTA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 얻은 이익을 농촌회생을 위해 적극 투자하라.

넷 째, 정부는 앞으로 있을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한·칠레 FTA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라.

여섯째, 정부는 쌀농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인들이 수급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라.

일곱째,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라.

여덟째, 농어가부채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 등 정부의 농어가부채 해결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년 10월 31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촉구 결의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02년 9월 19일 국제수로기구 이사진이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최종안의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찬반투표를 돌연 중단한 것은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국제관행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경상북도 도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제4차 개정판의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나 회원국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IHO 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회원국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알렉산드로 마라토스 이사장과 이사진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을 IHO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확립된 원칙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동쪽 해역의 명칭은 19세기 초까지 세계 대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이 주권 상실 상태에서 1929년 일본이 참여하여 발간한 IHO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에 IHO는 조속한 시일내에 바다의 원래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

행정사무감사계획총람

1. 감사대상

- 가. 대상기관
- 나. 대상사무
- 다. 제출서류

2. 감사위원회 편성

3. 위원회별 감사일정

4.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 가. 감사진행순서
- 나. 현지확인 협조
- 다. 감사실시결과보고 협조

5. 증인출석 요구

행정사무감사계획 총람

1. 감사대상

가. 대상기관

〈경상북도〉

구 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기타	
계	33	12	21	17
의회운영	1	○ 의 회 사 무 처 (1)		
기 획	8	○ 기 획 관 리 실 ○ 공 보 관 실 ○ 감 사 관 실 (3)	○ 공무원교육원 ○ 포항의료원 ○ 김천의료원 ○ 안동의료원 ○ 경북개발공사 (5)	
자치행정	4	○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여성국(2)	○ 경도대학 ○ 자연환경연수원(2)	○ 오지개발사업장 ○ 문화마을조성·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현장 ○ 사회복지시설 (4)
교육환경	4	○ 보건환경산림국(1)	○ 보건환경연구원(지소포함) ○ 산림환경연구소(지소포함)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3)	

농 수 산	8	○ 농 수 산 국 (1)	○ 농업기술원(하부조직포함) ○ 잠사곤충사업장 ○ 감시시험장 ○ 축산기술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지소포함)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 민물고기센터 (7)	
산업관광	2	○ 경 제 통 상 실 ○ 문화체육관광국 (2)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경주) ○ 한국국학진흥원(안동) ○ 문화재연구원(경산) ○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체육회(경산) ○ 소수서원, 선비촌(영주) ○ 경북 통상(주)(대구) (8)
건설소방	7	○ 건 설 도 시 국 ○ 소방본부 (2)	○ 종합건설사업소(지소포함) ○ 포항소방서 ○ 경산소방서 ○ 칠곡소방서 (4)	○ 자인~진량간 4차로 포장공사(경산 자인) ○ 장기 우회도로개설공사(포항 장기) ○ 원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영천 청통) ○ 왜관~대구간 4차로공사(칠곡 왜관) ○ 모서 우회도로개설공사(상주 모서) (5)

〈경상북도 교육청〉

구 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하 급 기 관	
계	13	10	3	
교육환경	13	교육국, 기획관리국, 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	포항, 안동, 구미교육청(3)	

나. 대상 사무

(1)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북도 관할 구역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속하는 사무
-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등

단, 위임받은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2) 주요 감사사항

구 분	감사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의회운영 위원회	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② 2002년도 예산집행 상황 ③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획 위원회	① 주요시책업무 추진사항 ②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③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④ 2002년도 예산집행 상황 ⑤ 2003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치행정 위원회	① 2001, 2002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② 2001, 2002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③ 2001,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⑤ 소관부서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

구 분	감사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교육사회 위원회	<경상북도> ① 2002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②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 ③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2001~2002년도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 ⑤ 2002년도 민원처리현황 ⑥ 소관부서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 <경상북도교육청> ①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폐교활용 대책 ② 사학지원, 정보화사업, 교사수급문제 전반
농수산 위원회	①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② 2002년도 예산집행 사항 및 미집행 사항 ③ 200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산업관광 위원회	① 주요시책의 기획 및 추진사항 ②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및 실적 ③ 2002년 10월말까지 예산집행 사항 ④ 200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경제통상실 및 문화체육관광국의 당면 현안사항 ⑥ 2002년도 10월말까지 민원처리 사항
건설 위원회	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② 2002년도 예산집행상황 ③ 2002년도 추경 및 2003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다. 제출할 서류

(1) 업무보고서

(2) 감사자료

〈경상북도 해당 자료〉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 개별 요구사항	비 고
합 계		78	818	
의회운영	계		5	
기 획	소 계	12	171	
	공 보 관 실	12	14	
	감 사 관 실		21	
	기 획 관 리 실		72	
	공무원 교육원		19	
	지 방 의 료 원		34	
	경북 개발 공사		11	
행정사회	소 계	17	204	
	자 치 행 정 국	17	125	
	사회복지여성국		41	
	경 도 대 학		25	
	자연환경연수원		13	
교육환경	소 계	12	70	
	보건환경산림국	12	34	
	보건환경연구원		14	
	산림환경연구소		11	
	팔공산도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11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 요구사항	비고
농 수 산	소 계	14	137	
	농 수 산 국	14	94	
	농 업 기 술 원		43	
산 업 관 광	소 계	7	99	
	경 제 통 상 실	7	46	
	문화체육관광국		53	
건 설 소 방	소 계	16	132	
	건 설 도 시 국	16	77	
	종합건설사업소		9	
	소 방 본 부		46	

〈경상북도교육청 해당 자료〉

감사위원회	계	공통사항	부서 개별 요구사항	비 고
교육환경	32	5	27	

※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덧붙임

(3) 작성방법

-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수감준비를 하여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2002.10.30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국 단위로 편철후 2002.11. 9(토)까지 소관상임위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작성기준일을 따로 지정하였거나 10월30일 현재로 작성이 곤란한 자료는 작성기준일을 별도로 표시요함

- 제출되는 감사자료의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위원회별 20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도 동일 방법임.
- 감사대상 기관별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별책 작성
 - 「업무보고」에 포함될 도정보고 내용은 감사대상 기관별로
 -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 기타 특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기본으로 “위원회별 주요감사사항”의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타부서 소관은 후단에 포함.

2. 감사위원회 편성

가.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위원장 : 손규삼 의회운영위원장
- 감사 위원 : 방유봉, 김석호, 김순건, 김정기, 김정자, 박경동,
윤경희, 이현준, 장하숙, 정상진, 한혜련, 황상조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박현규, 행정주사 강성일, 행정주사보 정병령, 속기사

나. 기획위원회

- 감사위원장 : 박성만 기획위원장
- 감사 위원 : 장하숙, 권경호, 김선종, 박경동, 박두필, 방유봉,
손규삼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이희지, 행정주사 이상인, 행정주사보 채희경, 속기사

다. 행정사회위원회

- 감사위원장 : 김희문 행정사회위원장
- 감사 위원 : 이현준, 김정자, 나종택, 손만덕, 우성호, 이상천,
장대진, 황복희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신현의, 행정주사 이 만, 행정주사보 이원철, 속기사

라. 교육환경위원회

- 감사위원장 : 신영호 교육환경위원장
- 감사 위원 : 김순견, 권준택, 김성하, 김응규, 김준호, 박승학,
박종욱, 정보호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영수, 행정주사 이복영, 행정주사보 박종식, 속기사

마. 농수산위원회

- 감사위원장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
- 감사 위원 : 정상진, 강영서, 김정기, 김주연, 양재경, 이상효,
이용석, 이정백, 정무웅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박기원, 행정주사 장창호, 행정주사보 고재명, 속기사

바. 산업관광위원회

- 감사위원장 : 최영욱 산업관광위원장
- 감사 위원 : 김석호, 김병진, 손경찬, 안순덕, 이원만, 이철우, 정일영, 한혜련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주근호, 행정주사 이종한, 행정주사보 김동희, 속기사

사. 건설소방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 달 건설소방위원장
- 감사 위원 : 황상조, 김기대, 박영화, 윤경희, 이종철, 이호근 장 욱, 채희영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이찬, 행정주사 안중섭, 행정주사보 안 민, 속기사

4.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가. 감사진행순서

(1) “감사 선언”의 선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감사선언을 선포함.

※ 감사는 회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선언을 선포하는 것임.

(2) 위원장 인사

- 먼저 “감사 선언”을 한 후에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됨.
- 의사일정은 “2002년도○○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으로 상정

(3) 증인 선서

○ 선서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함.

○ 선서 요령

- 상임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별첨 양식)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듣다.
-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지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증인이 알아야 할 사항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4) 기관장 인사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보고함.

(5) 질의·답변

-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해당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형식인데, 이 경우에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이 결국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 방 법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출석증인의 답변시에 질의시간과 진행 방법(일문일답식 또는 일괄 질의·답변식)에 대한 결정은 당해 위원회에서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나 현장확인등을 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

○ 현지확인의 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현장 또는 현지의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또는 현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지확인의 과정이며, 현지확인 활동은 「검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감사 위원중 일부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도 있음.

- 현지확인 진행순서

현지확인을 하는데는 정형화된 진행순서는 없으나 대체로

- ① 개회
- ② 위원장 인사
- ③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보고
- ④ 질의·답변 및 서류제출요구
- ⑤ 제출서류 실태 파악(필요한 서류 봉인)
- ⑥ 위원장 인사 순으로 진행함

(7)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강평의 의의

감사가 사실상 종료하게 되면 위원장은 간단하게 감사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당부할 사항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함.

- 종료 선언

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끝나면 「이상으로 ○○ 기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당해 기관의 감사종료와 산회를 선포함

나. 현지확인 협조

(1) 감사장 설치

-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로 통보받은 즉시 감사위원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수감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감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위원회 수감대상기관(부서)에서는 현지확인시에 설계도, 시방서, 코아채취기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 별첨 「좌석 배치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좌석, 전문위원 좌석, 속기사의 속기를 위한 좌석을 배치하되 해당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속기록 작성 준비

- 속기석은 속기사의 교대가 가능하도록 2개좌석을 배치하고,
- 속기석에는 속기기록 청취용 「헤드폰」을 설치하고
- 감사장에는 감사과정의 모든 질의·답변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와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 기타 속기사로부터 속기에 필요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3) 감사장 안내

- 감사장소의 안내는 수감기관의 해당부서에서 담당하여 감사 당일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

(4) 현지 이동에 따른 차량지원

현지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가능한 의회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으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차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감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행정사무감사사항의 기록 및 홍보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별 모든 감사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존할 사항과 함께 홍보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본 감사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감기관등에서 조치.

다. 감사실시 결과보고 협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해당사항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12.12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부서)
 -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방법
 -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 의견
 - 시정요구사항(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 처리요구사항(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 건의사항(건의나 희망사항)
- 주요 근거서류(감사결과 증빙서류) - 별첨 요함
- 기타 특기사항

5. 증인출석 요구

가. 증인출석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출석을 요구

나.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

출석증인의 대상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와 함께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함.

다. 증인의 출석통지 및 증인 의무

(1) 해당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 명의로 출석 해당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증인 당사자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

(2) 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대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라. 증인 출석 불가이유서 제출

의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증인의 보호

증인, 참고인은 증언 또는 진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시는 감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의정활동보고서(제173회 임시회)

2002. 11 인쇄 / 2002.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